

#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96
----------	------

제출연월일 : 2024. 6. .

제출자 : 하남시장

## 1. 개정이유

-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회의 자치센터 운영 관련 기능 명확화(안 제2조제3호,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제6항, 제10조제7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4조)
- 나. 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 관련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비율 확대 및 나이 계산 기준 명시(별표 2)
- 다. 현재 자치회 및 위원회의 회의일정 등 운영실태와 맞지 않는 기한의 개정(안 제10조제6항, 안 제14조제2항)
- 라. 한글맞춤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장 총칙, 제10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덧붙임**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 기간: 2024. 3. 26.~2024. 4. 15.[20일간]

나. 의견 내용: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9. 참고사항: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과**

##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장 총칙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자치회”란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와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회”를 “자치회 또는 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를 “자치회 또는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의견”을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자치회 또는”으로, “또는 자원봉사자”를 “및 자원봉사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는”을 “자치회 또는 위원회는”으로,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을 “제외한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 및 자원봉사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위원회”를 “자치회 또는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위원회” 를 “자치회 또는 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 를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로, “협의하여” 를 “협의하여 자치회 또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의한” 을 각각 “제3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의하여 위원회” 를 “따라 자치회 또는 위원회” 로, “위원회가 동장” 을 “자치회 또는 위원회가 동장” 으로, “20일” 을 “1개월”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하며,” 를 “하며, 자치회 또는” 으로, “위원회 명의” 를 “자치회 또는 위원회 명의” 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제4항 중 “위해” 를 “위해 자치회 또는” 으로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인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회계년도 개시 3월전” 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으로 하고, “위원회” 를 “자치회 또는 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 를 “자치회 또는 위원회” 로, “20일” 을 “1개월” 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를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로 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월 이내” 를 “1개월 이내” 로, “방법에 의해” 를 각각 “방법에 따라” 로 한다.

제24조 중 “위원회” 를 “자치회 또는 위원회” 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자치행정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팀장 직위 · 성명	자치행정팀장 이광호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백진주 (031-790-5231)

[별표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  
(조례 제10조제5항 관련)

**1. 사용료 면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 단체가 공익성, 공공성을 목적으로 주관하는 행사

**2. 수강료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

구 분	감면기준	감면비율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수혜대상자	10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보호대상자	50%	
노인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65세 이상 대상자	5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상자로서 65세 미만인 자	50%	
다자녀 가정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50%	
병역명문가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자	50%	
기타	자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감면대상자로 결정한 자	50% 이내	운영 세칙

※ 수강료 감면은 1인 최대 2개 프로그램에 한하며, 2개 이상의 감면기준에 해당 하더라도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 나이의 계산은 만(滿) 나이로 하되, 기준일은 수강 신청의 대상이 되는 분기 또는 월의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1조(목적) (생 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lt;신 설&gt;</p> <p>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 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p> <p>1. ~ 5. (생 략)</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생 략)</p> <p>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u>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p>	<p><u>제1장 총칙</u></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주민자치회”란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p> <p>제3조(원칙) ----- ---- 한다)와 <u>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 라 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u>-----.</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자치회 또는 위원회</u>----- ----- ----- ----.</p>

③ · ④ (생략)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 ① -----  
-----  
----- 자치회 또는 위원회 -----  
-----.

② ----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견----- 소속공무원, 자치회 또는 --- 및 자원봉사자-----  
-----.

③ 자치회 또는 위원회는 -----  
----- 제외한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  
-----  
-----.

④ -----  
----- 자치회 또는 위원회 -----  
-----  
-----  
-----  
-----.

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10조(사용료 등) ① (생략)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생략)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2로 정한다.

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자치회 또는 위원회-----.

③ -----  
-----  
-----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  
----- 협의하여 자치회 또는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제3항에 따른 -----  
-----

⑥ ----- 의하여 자치회 또는 위

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 ~ ② (생략)

③ 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원회----- 자치회 또는 위원회가 동장-----  
-----  
----- 1  
개월 -----  
-----.

⑦ -----  
-----  
----- 하며, 자치회 또는  
-----  
----- 자치회  
또는 위원회 명의로-----  
-----.

제11조(이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인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  
----- 위해 자  
치회 또는 -----  
-----.

⑤ (생략)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설치)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구성 등) ①~② (생략)

③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보고) ① -----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 자치회 또는 위원회-----.

② -----  
----- 자치회 또는 위원회-----  
--- 1개월 -----  
-----.

제15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에 따른 -----  
-----  
-----  
-----

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지원자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생략)

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 1개월 이내 -----  
-----  
-----  
-----  
----- 방법에 따라 -----  
-----  
-----

⑦~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시행규칙 등) -----  
-----  
----- 자치회 -----  
----- 또는 위원회 -----  
-----.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

나. 비용 발생 요인

- 수강료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자의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함

※ ('23. 12. 주민 건의사항) 국가유공자 등 대부분이 65세 이상에 해당→ 現 센터 감면기준은 65세 이상과 국가유공자 등이 동일하게 50% 감면 적용되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 차원에서 감면 확대 필요

※ ('24. 1.기준) 우리 시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대상자: 3,736명 → 65세 이상 2,830명/ 75%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소요 운영비 중에서 징수 가능한 수강료를 감안한 금액을 지원토록 되어있으며, 2024년부터 洞 수강료 감면액의 30% 이내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감면액 보전을 위한 예산으로 반영하였음.

※ '24년 당초예산: 99,600천원/83,000,000원×4회×30% ('23년 3분기 감면액 기준 편성)

- 국가유공자 등의 센터 이용 관련 별도 통계자료가 없어, '24.1.기준 우리 시 주민등록인구, 센터 프로그램 주 이용층인 65~80세 인구, 1분기 감면인원 및 국가유공자 등 대상자 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계 기준인원 산출.

구 분	전체 인원	65~80세 인구 (A)	'24년 1분기 센터접수		비 고
			등록인원	50% 감면(B) <sup>1)</sup>	
주민등록인구	329,861명	39,675명	6,340명	3,599명	B의 80%를 65세~80세로 가정할 경우, A의 7%에 해당 ⇒ 1,950명의 7%는 136명
국가유공자 등	3,736명	1,950명	-	-	

- 센터 평균 수강료는 강좌당 월 15,000원으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을 현행 50%에서 100% 수강료 감면할 경우(감면액 7,500원→15,000원/ 1인당 1.5강좌 수강 전제), 증가되는 감면액 추계는 A와 같으며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은 B와 같음.
- 연 감면액 증가분(A)  $136\text{명} \times 15,000\text{원} \times 50\% \times 1.5\text{강좌} \times 12\text{개월} = 18,360,000\text{원}$
- 감면액 증가로 인한 추가 예산편성 필요액(B)  $18,360,000\text{원} \times 30\% = 5,508,000\text{원}$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99.6	105.1	105.1	105.1	105.1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액 보전	99.6	105.1	105.1	105.1	105.1

※ '24년 당초예산 편성액 99.6백만원, 감면 확대로 인한 추가 예산편성은 '25년부터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예정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향후 수강료 감면현황 파악을 위해 대상별 감면인원, 감면금액 등 세분화된 통계자료 조사 예정

**4. 작성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최용호(031-790-6110)**

**자치행정팀장 이광호(031-790-5185)**

**주 무 관 백진주(031-790-5231)**

1) 50% 감면대상에는 65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등이 있으나 그 중 65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함.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세 출		99,600	105,100	105,100	105,100	105,100	520,000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액 보전		99,600	105,100	105,100	105,100	105,100	520,000
재원 조달		99,600	105,100	105,100	105,100	105,100	520,000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99,600	105,100	105,100	105,100	105,100	520,000
	지방세	99,600	105,100	105,100	105,100	105,100	520,000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 관계법령 발췌서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 (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장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 9. 15.]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9. 15.>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6. 4., 2015. 7. 24., 2016. 5. 29., 2019. 12. 3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⑦ 삭제 <1994. 12. 31.>

⑧ 삭제 <2000. 12. 30.>

[제목개정 2008. 3. 28., 2011. 9. 15.]